

이의신청 결과 통보서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.

심의 차수						
피접종자 정보	성명		생년월일		접종정보	
심의 결과						
안내사항	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1.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 2.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 3.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 4.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					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